변경대비표

■변경대상 : 하나UBS 안정성장1월호 증권투자신탁[주식]

| ■변경대상 : 하나UBS 안정성장1월호 증권투자신탁[주식]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 |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|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|
| | 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 | 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 |
| 제33조(이익분 | 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| 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|
| 배) | 분배한다 |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242</u> 조에 따른 |
| | |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 |
| | | <u>를 유보한다.</u> |
| |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|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|
| 제 39 조(보수) |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 |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<u>투자신</u> |
| | 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으로 하며 | 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|
| |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 | <u>매 6개월간으로</u> 하며 보수계산기간 |
| | 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|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|
| 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|
| | 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|
| |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 |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|
| | 산에서 인출한다. |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|
| |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| 한다. |
| |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|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|
| | |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|
| |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 |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|
| | 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 |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 |
| |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| 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 |
| |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| 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</u> |
| 제50조(공시 및 |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| 로 교부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 |
| 보고서 등) |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|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|
| |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 |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 |
| | |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|
| | |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 |
| | |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|
| | |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|
| 부 칙 | (신 설) |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|
| | | - 소득세법 개정(2009.7.1)사항 반영 : 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익분배금 조항 변경 |
|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12.21) |
| 사항 반영: 운용보고서 등 발송 방법 |
| 변경 |
| -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 변경 : 최 |
| 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 → 투 |
| 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일로부 |
| 터 매 6개월간 |
| |